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방법

### □ 승진반영 방법

- 적용대상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적용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73조제2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제1항·제2항에 의한 승진임용(우대승진,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판단기준 : 산출기준일 현재 당해계급

1. 전체 교육훈련이수시간이 「당해계급 근무년수×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중 「연도별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 비율」 준수 여부
3.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 의무비율 중 「집합교육 의무시간 이수」 준수 여부
4. 당해계급에서 「교육훈련기관 리더십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준수 여부
5. 사회복지분야 「연 4시간 이상 이수」 준수 여부
6.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이수」 준수 여부 - '17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

#### ①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등에서 제외하더라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교육훈련 미충족자를 승진심사 등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배수범위 밖의 상위 순위를 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님.

#### ② 근무년수 : 2008.1.1부터 기산 / 산출식 : 근무월(15일이상 1월)/12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연도별 근무개월 및 교육시간이 다를 경우, 각 연도별 이수시간을 계산 후 합산

- [직위해제, 정직] 직위해제, 정직에 따른 기간도 교육시간 산출시 근무기간에서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강등의 경우 제71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월할계산하여 상시학습 이수대상에서 제외함.
- [신규채용, 승진후보자]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 □ 승진반영 적용 예외

- 적용대상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 가능
    - ※ 특별한 사유 : 주요 현안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근무 등
  -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인정 신청서(붙임3) 제출
- 기 타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에 응시하게 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 ③ 실적 산출기간

- 「①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을 교육훈련시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 이수한 시간을 승진심사 산출 기준일에 소급하여 합산 (단, 합산시에도 산출기준일은 변동되지 않음)

### □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유의사항

- [파견·휴직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각호(제4호 교육훈련과제 제외)의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각호(제4호 제외)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 실적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에도 상시학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훈련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교육실적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휴직 또는 파견 종료일로 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휴직 또는 파견기간의 교육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근무기간에는 불산입)

- [전보·전직자] 소속 자치단체장을 탈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 종전 근무기관 또는 종전 직렬의 동일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현 근무기관에서 이수한 시간과 합산**하여 반영
- [강임자]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의 승진 임용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 [장기병가자, 출산휴가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과 출산휴가 기간은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 행정포탈의 행정업무(복무관리) 시스템의 '근무상황관리'에 등록된 경우만 '근무연수 제외 인정'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실적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장기 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에도 상시학습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적용사례】 (6급 ○○○의 아래 조건하에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 ◆ 학습목표시간 및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 학습목표 기준시간 : '08년 60시간, '09년 80시간, '10~'11년 100시간, '12~'15년 80시간
- ※ 교육훈련기관 의무 이수비율('08~'09년 20%, '10년 이후 30%)
- 인사정보 : 육아휴직('08.3.1~'09.2.13), 병가('10.2.1~'10.3.31)
- 연도별 인사정보 반영한 학습목표시간 - 소수점 이하 절사함

구분	근무년수 산출	학습목표시간 산출 (근무년수×연간 기준시간)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목표시간×의무비율)	비 고
계	6개월	60시간	172시간	-
'08년	2개월(1.1-2.28)	전체(2월+12월)×60h = 10h	10시간×20% = 2h	육아휴직 10개월 제외('08.3.1~'09.2.13)
'09년	11개월(2.14-12.31)	전체(11월+12월)×80h = 73h	73시간×20% = 14h	15일 이상 1개월 적용
'10년	12개월(1.1-12.31)	전체(12월+12월)×100h = 100h	100시간×30% = 30h	병가(2.1-3.31)는 60일 미만으로 근무연수 반영
'11년	12개월(1.1-12.31)	전체(12월+12월)×100h = 100h	100시간×30% = 30h	-
'12년	12개월(1.1-12.31)	전체(12월+12월)×80h = 80h	80시간×30% = 24h	-
'13년	12개월(1.1-12.31)	전체(12월+12월)×80h = 80h	80시간×30% = 24h	-
'14년	12개월(1.1-12.31)	전체(12월+12월)×80h = 80h	80시간×30% = 24h	-
'15년	12개월(1.1-12.31)	전체(12월+12월)×80h = 80h	80시간×30% = 24h	-

#### ◆ 학습이수 시간 - 산출시점 : 2015. 12. 31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학습이수시간	647시간	20h	85h	89h	120h	90h	80h	85h	78h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	188시간	0h	25h	7h	31h	40h	30h	20h	35h
집합교육 이수시간	43시간	-	-	-	8h	-	14h	7h	14h
사회복지과정 이수시간	4시간	-	-	-	-	-	-	-	6h

#### ◆ 충족조건 : (학습목표시간 < 학습이수시간) &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 &  
(집합교육 의무이수 시간 : '13년 7시간, '14년 14시간) &  
(사회복지과정 의무이수 시간 : '15년 4시간)

- 7년간 총 교육이수시간이 647시간으로 충족요건인 603시간 이상으로 충족
-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이 188시간으로 충족요건인 172시간 이상으로 충족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시간이 43시간으로 충족요건인 35시간 이상으로 충족
- 사회복지분야 이수시간이 6시간으로 충족요건인 4시간 이상으로 충족